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4
----------	------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2월 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가.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인의 도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산악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나. 2020년 5월 준공에 앞서 향후 산악인들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자립경영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31('20.5월 준공예정)
- 규모 : 부지 3,000 m^2 , 연면적 2,330.46 m^2 (지상2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상설·기획 전시실, 시청각실, 고산체험실, 다목적실, 안내데스크, 클라이밍 암벽장 등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6월 ~ '23.5월)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방법 : 신규위탁(공모)
- 수탁업체 : 산악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업체 선정
- 위탁업무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사용료 및 입주시설 관리비 징수 등 재무회계 및 행정업무

다.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5호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19.6.1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19.9.19.)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단순히 건물관리 뿐만 아니라 산악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준공(예정)일은 '20. 5월이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해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각종 시설 및 향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초기(1~2년) 일부 운영비 지원 가능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산악 안전교육 및 산악체험 활동을 통하여 체력향상,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악문화체험센터가 2020년 5월 준공하기에 앞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서울시가 부지(3,000㎡, 11억4천만원)를 제공하고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국비(50억), 구비(10억), 성금모금(27억원)을 통해 건축비를 마련하여 재단이 준공 후 최장 20년 이내로 무상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15년 12월)할 계획이었음.

재단이 국비, 구비는 예정대로 확보하였으나 성금모금액 29억원 중 2억 5천만원만 모금하여 '18년 3월 공정률 93%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됨.

재단은 추가로 성금을 모금할 여력이 없고 문체부의 추가지원도 힘든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지 및 기투입된 건축비의 기회비용이 수반되므로 운영권(무상사용 수익허가)을 포기('19년

3월)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부족한 건립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희망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서울시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추경(제287회 정례회)을 통해 20억원이 편성됨.

서울시와 재단 간 체결한 협약서('14년 7월)에서 서울시는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재단에서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 외장공사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심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일 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전액 명시이월됨.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립 사업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립 방식	- 재단에서 건축물(내·외장 공사)준공 후 市에 기부채납	- 재단에서 건축물(외장 공사) 준공하여 市에 기부채납 후, 市에서 예산 투입하여 내장공사 ※ 내장공사는 암벽등반시설, 내부 인테리어 등
사업 예산	- 토지 : 市 제공 - 건축비(87억원) : 국비 50억, 구비 10억, 재단 27억	➡ - 토지 : 市 제공 - 건축비(84.5억원) : 국비 50억, 시비 20억, 구비 10억, 재단 4.5억
운영 방식	- 재단이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 市에서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 검토 의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에 해당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총사업비가(87억→84.5억)가 2억 5천만원 감소되어 투자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서울시의 재정투입규모가 변경(토지비 11.4억원 외에 20억원 추가)되었으며 '20년도 예산안에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예견되는 바, 재정 투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한편 동 사무에 대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1.)에 따르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기능보강과 같은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 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동 시설은 신규 건립시설로 유지보수 비용이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 계획”(’19. 6.)에서 공용 시설비, 전시공간 시설비, 체험공간 시설비, 가구 및 인테리어 등 2억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20년도 예산안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3억원(6개월분)이 편성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12.2.)를 앞두고 있음.

현재 서울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23군데 중 유일하게 ‘서울주얼리 지원 센터 제2관’만 인테리어 개선 비용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민간위탁도 위탁방식(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위탁 현황>

('19.10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민간위탁(건)	386	252	111	23

- 향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 및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한 수탁자 모집 및 선정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다지고, 산악문화체험센터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4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인의 도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산악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나. 2020년 5월 준공에 앞서 향후 산악인들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자립경영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31('20.5월 준공예정)
- 규모 : 부지 3,000 m^2 , 연면적 2,330.46 m^2 (지상2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상설·기획 전시실, 시청각실, 고산체험실, 다목적실, 안내데스크, 클라이밍 암벽장 등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6월 ~ '23.5월)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방법 : 신규위탁(공모)

- 수탁업체 : 산악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업체 선정
- 위탁업무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사용료 및 입주시설 관리비 징수 등 재무회계 및 행정업무

다.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5호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19.6.1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19.9.19.)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단순히 건물관리 뿐만 아니라 산악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준공(예정)일은 '20. 5월이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해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각종 시설 및 향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초기(1~2년) 일부 운영비 지원 가능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손경이 (☎ 2133-2698)